

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(균등분) 감면

재무과 부과팀

055-860-3176

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함

감면대상

-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,800만 원 이상이면서,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
- 자본금 10억 이하의 중소기업
- 자본금 10억 초과 30억원 이하이면서 종업원 100인 이하인 중소기업

감면내용

-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의 100분의 50
※ 주민세(개인균등분) 제외, 별도 신청 불필요